

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725호

2022. 1. 10.(월)

선 람	기관의 장

고 시

- 생활환경정비사업(3단계)기본 및 시행 계획(변경) 고시2
- 주민투표 총수권자 총수 공표5
-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표6
-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표7
- 도로명 주소 부여 고시9

공 고

- 소하천의 점용·사용 허가 공고11

회 람							
----------------	--	--	--	--	--	--	--